

시험확인서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시험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.

1. 시료내용

제품명		제조회사명(대표자)	
접수번호		시료채취장소	
시료채취 일시		접수일자	
시료채취 방법		검사목적	
대상 건축자재 [] 접착제, [] 페인트, [] 실란트(sealant), [] 퍼티(putty), [] 벽지, [] 바닥재, []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			

2. 오염물질 방출 시험 결과

가. 검사결과 종합

판정	
기준 초과항목	

나. 항목별 검사결과

검사항목	기준	시험 결과

3. 유효기간 :

시험기관의장

직인

